

시보

선 람	기 관 의 장

제1190호 2021. 9. 17. (금)



시화-철쭉



시조-갈매기



시목-느티나무

고 시

- 삼척시 고시 제155호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고시 ----- 2
- 삼척시 고시 제156호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 3
- 삼척시 고시 제157호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고시 ----- 6
- 삼척시 고시 제158호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고시 ----- 8
- 삼척시 고시 제159호 삼척시 도로구간 변경 고시 ----- 10
- 삼척시 고시 제160호 도로명주소 부여 폐지 고시 ----- 12

공 고

- 삼척시 공고 제1052호 삼척시 폐광지역 통합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 20

공 람									
--------	--	--	--	--	--	--	--	--	--

발행 : 문화홍보실 (전화 : 570-3229, FAX : 570-3132)

삼척시 고시 제2021-155호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고시

삼척시의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이 의결되었기에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 9. 11.

삼척시장

(단위 : 백만원)

회계별	구분	제2회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증△감		비고
					%	
합	계	786,599	714,757	71,842	10.05	
일	반 회 계	737,292	666,709	70,583	10.59	
특	별 회 계	49,307	48,048	1,259	2.62	
	기타 특별회계	18,407	18,148	259	1.43	
·	하수도사업	6,773	6,701	72	1.07	
·	주택사업	10	10	-	-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5,851	5,851	-	-	
·	천연가스생산기지 주변지역지원사업	1,004	1,004	-	-	
·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405	398	7	1.85	
·	의료급여기금	1,565	1,387	178	12.8	
·	자활기금운영	1,345	1,345	-	-	
·	주차장	652	650	2	0.31	
·	임대아파트관리운영	802	802	-	-	
	공기업 특별회계 (상수도사업)	30,900	29,900	1,000	3.34	

삼척시 고시 제2021 -156호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도로명주소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의거 우리시 건축물 신축 등의 사유로 부여하는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 9. 14.

삼척시장

○ 도로명주소 부여: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장호안1길 84 외 2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비고
	주소	고시일	사유	고시일	부여사유	
(별지참조)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삼척시청 민원과(☎570-3946~9)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현행 지번주소는 일정기간 도로명주소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8조 및 제2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제8조제2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순 번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주 소	고시일	사유	고시일	부여 사유
1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장호리 산22-1, 413-14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장호안1길 84	20210914	기존건물	20090626	일련번호방식 행정구역명, 위치복합사용
2	강원도 삼척시 하장면 갈전리 1-3	강원도 삼척시 하장면 백두대간로 2977	20210914	가설건축물	20090807	자연지형명칭 반영(산맥)
3	강원도 삼척시 사직동 437-1	강원도 삼척시 중앙로3길 49 (사직동)	20210914	건물신축	20090626	일련번호방식 (중앙로분기)

도로명주소 부여 내역

구분	순번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고시일	사유	도로명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비고
		계	3건	고시일	사유					
부여	1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장호리 산22-1, 413-14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장호안1길 84	20210914	기준건물	20090626	일련번호방식행정 구역명, 위치복합사용			
부여	2	강원도 삼척시 하장면 갈전리 1-3	강원도 삼척시 하장면 백두대간로 2977	20210914	가설건축물	20090807	자연지형명칭 반영(산맥)			
부여	3	강원도 삼척시 사적동 437-1	강원도 삼척시 증암로3길 49 (사적동)	20210914	건물신축	20090626	일련번호방식(증암로분기)			

삼척시 고시 제 2021-157호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고시

「주택법」 제15조제1항에 의거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같은 법 제15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9월 13일

삼척시장

1. 사업주체 상호 및 소재지

- 상호 : 신성건설산업주식회사 대표 김연기
- 소재지 : 광주광역시 북구 하서로 424 ,405호(용두동)

2. 사업개요

- 대지위치 : 강원도 삼척시 마달동 54번지 외 8필지
- 대지면적 : 9,679㎡
- 건축면적 : 전)1,974.3049㎡ 후)1,991.4175㎡
- 연 면 적 : 전)31,278.8993㎡ 후)31,271.7791㎡
- 사업규모 : 아파트 3동 및 부대시설 5동 / 205세대
- 평형별세대수 : 59㎡형 - 36세대, 82㎡형 - 2세대, 84㎡형 - 167세대
- 층 수 : 지하2층 / 지상 20층
- 구 조 : 철근콘크리트구조(벽식구조)
- 사 업 비 : 36,227백만원

3. 사업시행기간 : 전)2020. 10. 01. ~ 2022. 08. 30.

후)2020. 10. 01. ~ 2023. 06. 30.

4. 다른 법률에 의한 의제사항

-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5. 의제사항 고시 목록

- 해당없음

삼척시 고시 제 2021 - 158호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고시

「주택법」 제15조제1항에 의거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같은 법 제15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9월 13일

삼척시장

1. 사업주체 상호 및 소재지

- 상 호 : 삼척에버빌디오션지역주택조합 대표 성성제
일성건설(주) 대표 유필상
- 소재지 : 강원도 삼척시 새천년도로 583, 2층(갈천동)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하로 507번길 80, 402호(구월동, 태광프라자)

2. 사업개요

- 대지위치 : 강원도 삼척시 갈천동 102-1번지 외 5필지
- 대지면적 : 50,296㎡
- 건축면적 : 5,852.6353㎡
- 연 면 적 : 118,204.9484㎡
- 사업규모 : 아파트 8동 및 부대시설 19동 / 885세대
- 평형별세대수 : 59㎡형 - 371세대, 74㎡형 - 178세대, 84㎡형 - 326세대
123㎡형 - 4세대, 143㎡형 - 6세대
- 층 수 : 지하2층 / 지상 28층
- 구 조 : 철근콘크리트구조(벽식구조)
- 사 업 비 : 190,868백만원

3. 사업시행기간 : 2018. 05. 30. ~ 2021. 12. 31.

4. 다른 법률에 의한 의제사항

- 산지관리법 제14조

5. 의제사항 고시 목록

- 해당 없음

삼척시 고시 제2021 - 159호

삼척시 도로구간 변경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의거 삼척시 도로구간 변경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 9. 15.

삼척시장

- 고시일 : 2021. 9. 15. (수)
- 고시방법 : 시보, 시홈페이지, 게시판
- 고시내용 : 삼척시 도로구간 변경 1건 (조서 및 위치도 참조)
- 도로명의 부여·변경 절차

도로구간 및 도로명 부여·변경신청	신청을 받은 날부터 ⇒ 10일 이내	주민 의견 수렴 공고	주민 의견 수렴한 날부터 ⇒ 30일 이내	주소정보위원회 심의	심의 마친 날부터 ⇒ 10일 이내
주소사용자의 5분의1 신청		14일 이상		주소정보위원회 개최	

<변경의 경우>

공고 및 신청인 통보	공고한 날부터 ⇒ 30일 이내	서면 동의를 받은 경우 (주소사용자의 1/2 이상)	서면 동의 받은 날로부터 (서면 동의 생략 포함) ⇒ 10일 이내	고시 및 신청인 통보
		서면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 (주소사용자의 1/2 미만)	서면 동의 만료일로부터 ⇒ 10일 이내	변경사항 및 변경기준일
· 심의 결과 · 변경 내용 및 절차				공고 및 신청인 통보 결과 통보

- ※ 도로명변경은 최초 도로명 고시일 3년 경과 후 가능함
- ※ 변경 및 폐지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도로명은 사용할 수 없음
- ※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견수렴 및 주소정보위원회의 심의 등 서면 동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삼척시청 민원과 지적정보부서(☎033-570-394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구간 변경 조서 및 위치도

구분	도로명	도로 위계	관할행정 구역	도로구간			기초 간격 (m)	기초번호	변경 사유
				시작지점	끝지점	길이 (m)			
조서	변경 전 (기존)	기곡4길	원덕읍	기곡리 897-9	기곡리 973	709	3	404-1 → 404-72	도로구간 증점연장
	변경 후	기곡4길	원덕읍	기곡리 897-9	기곡리 산 26	841	3	404-1 → 404-86	



위 치 도

※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견수렴 및 주소정보위원회와 심의 등 서면 동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음.

삼척시 고시 제2021 - 160호

도로명주소 부여·폐지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1조,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의거 우리시 건축물 신축 등의 사유로 부여·폐지하는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 9. 17.

삼척시장

○ 도로명주소 부여·폐지 :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상명방길 297 외 35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비고
	주소	고시일	사유	고시일	부여사유	
(별지참조)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삼척시청 민원과(☎570-3947)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 (www.jusa.ga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현행 지번주소는 일정기간 도로명주소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8조 및 제2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8조 제2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도로명주소 부여·폐지 고시

순번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주소	고시일	사유	고시일	부여 사유
1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상맹방리 221-11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상맹방길 297	20210917	가설건축물	20090626	행정구역명사용
2	강원도 삼척시 정상동 산23	강원도 삼척시 동해대로 4104 (정상동)	20210917	가설건축물	20090710	동해를 연결하는 주요도로
3	강원도 삼척시 하장면 장전리 84-6	강원도 삼척시 하장면 백두대간로 2685	20210917	건물신축	20090807	자연지형명칭 반영(산맥)
4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기곡리 975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기곡4길 404-80	20210917	가설건축물	20090626	행정구역명사용 (일련번호방식)
5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기곡리 964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기곡4길 404-51	20210917	가설건축물	20090626	행정구역명사용 (일련번호방식)
6	강원도 삼척시 하장면 오두재로 860-177	폐지	20210917	건축물대장 말소	20090807	자연지형명칭 반영(오두재)
7	강원도 삼척시 하장면 백두대간로 3330-6	폐지	20210917	건축물대장 말소	20090807	자연지형명칭 반영(산맥)
8	강원도 삼척시 하장면 백두대간로 2639-43	폐지	20210917	건축물대장 말소	20090807	자연지형명칭 반영(산맥)
9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호사3길 167	폐지	20210917	건축물대장 말소	20090626	일련번호방식, 행정 구역명사용 (삼척로분기)
10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호사3길 166	폐지	20210917	건축물대장 말소	20090626	일련번호방식, 행정 구역명사용 (삼척로분기)

도로명주소 부여·폐지 고시

순번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주소	고시일	사유	고시일	부여 사유
11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임원안길 525-82	폐지	20210917	건축물대장 말소	20090626	행정구역명, 위치활용
12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임원안4길 11-27	폐지	20210917	건축물대장 말소	20090626	일련번호방식사용 (임원안길분기)
13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임원안4길 11-9	폐지	20210917	건축물대장 말소	20090626	일련번호방식사용 (임원안길분기)
14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옥원길 68	폐지	20210917	건축물대장 말소	20090626	행정구역명칭사용 (옥원이천로분기)
15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비화진길 112-3	폐지	20210917	건축물대장 말소	20090626	지역명(마을명)사용
16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비화진길 112-2	폐지	20210917	건축물대장 말소	20090626	지역명(마을명)사용
17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노실길 81-7	폐지	20210917	건축물대장 말소	20090626	지역명(마을명)사용
18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노경산양길 58-25	폐지	20210917	건축물대장 말소	20090626	행정구역명 (노경,산양) 복합활용
19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가곡천로 3037-1	폐지	20210917	건축물대장 말소	20090626	지형지물(가곡천) 명칭활용
20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가곡천로 3037	폐지	20210917	건축물대장 말소	20090626	지형지물(가곡천) 명칭활용

도로명주소 부여·폐지 고시

순 번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주 소	고시일	사유	고시일	부여 사유
21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가곡천로 3035	폐 지	20210917	건축물대장 말소	20090626	지형지물(가곡천) 명칭활용
22	강원도 삼척시 신기면 서하길 40	폐 지	20210917	건축물대장 말소	20090626	행정구역명사용
23	강원도 삼척시 신기면 강원남부로 2800	폐 지	20210917	건축물대장 말소	20090807	지역적 특성반영
24	강원도 삼척시 노곡면 하반천길 68	폐 지	20210917	건축물대장 말소	20090626	행정구역명사용
25	강원도 삼척시 노곡면 하마읍길 59-14	폐 지	20210917	건축물대장 말소	20090626	행정구역명사용
26	강원도 삼척시 노곡면 하마읍길 59-4	폐 지	20210917	건축물대장 말소	20090626	행정구역명사용
27	강원도 삼척시 노곡면 주지로 255-2	폐 지	20210917	건축물대장 말소	20090626	종점부행정구역명 사용 (노곡면주지리)
28	강원도 삼척시 노곡면 주지로 255-1	폐 지	20210917	건축물대장 말소	20090626	종점부행정구역명 사용 (노곡면주지리)
29	강원도 삼척시 노곡면 상천기길 47	폐 지	20210917	건축물대장 말소	20090626	행정구역명사용
30	강원도 삼척시 노곡면 상마읍길 265	폐 지	20210917	건축물대장 말소	20090626	행정구역명사용

도로명주소 부여·폐지 고시

순 번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주 소	고시일	사유	고시일	부여 사유
31	강원도 삼척시 노곡면 박걸남로 441-39	폐 지	20210917	건축물대장 말소	20090626	역사인물(박걸남) 이름활용 (문화재명칭)
32	강원도 삼척시 노곡면 미근로 735-39	폐 지	20210917	건축물대장 말소	20090626	행정구역 (미로,노곡,근덕) 연결구간시종점지 역명칭활용 (미로,근덕)
33	강원도 삼척시 노곡면 노곡로 196	폐 지	20210917	건축물대장 말소	20090626	행정구역명(노곡면) 활용
34	강원도 삼척시 노곡면 노곡로 165	폐 지	20210917	건축물대장 말소	20090626	행정구역명(노곡면) 활용
35	강원도 삼척시 가곡면 가곡천로 1496-15	폐 지	20210917	건축물대장 말소	20090626	지형지물(가곡천) 명칭활용
36	강원도 삼척시 가곡면 가곡천로 915-6	폐 지	20210917	건축물대장 말소	20090626	지형지물(가곡천) 명칭활용

도로명주소 부여 및 폐지 내역

구분	순번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고시일	사유	도로명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비고
		계	36건	도로명주소	36건					
부여	1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상명방리 221-11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상명방길 297	20210917	가설건축물	20090626	행정구역명사용			
부여	2	강원도 삼척시 정상동 산23	강원도 삼척시 동해대로 4104 (정상동)	20210917	가설건축물	20090710	동해를 연결하는 주요도로			
부여	3	강원도 삼척시 하장면 장전리 84-6	강원도 삼척시 하장면 백두대간로 2685	20210917	건물신축	20090807	자연지형명칭 반영(신맥)			
부여	4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기곡리 975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기곡4길 404-80	20210917	가설건축물	20090626	행정구역명사용(일련번호방식)			
부여	5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기곡리 964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기곡4길 404-61	20210917	가설건축물	20090626	행정구역명사용(일련번호방식)			
폐지	6	강원도 삼척시 하장면 오두재로 860-177		20210917	건축물대장말소	20090807	자연지형명칭 반영(오두재)			주택
폐지	7	강원도 삼척시 하장면 백두대간로 3330-6		20210917	건축물대장말소	20090807	자연지형명칭 반영(신맥)			주택
폐지	8	강원도 삼척시 하장면 백두대간로 2639-43		20210917	건축물대장말소	20090807	자연지형명칭 반영(신맥)			주택
폐지	9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호산3길 167		20210917	건축물대장말소	20090626	일련번호방식, 행정구역명사용 (심척로분기)			주택
폐지	10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호산3길 166		20210917	건축물대장말소	20090626	일련번호방식, 행정구역명사용 (심척로분기)			이업인후생회관
폐지	11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임원안길 525-82		20210917	건축물대장말소	20090626	행정구역명, 위치 활용			공가
폐지	12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임원안4길 11-27		20210917	건축물대장말소	20090626	일련번호방식사용(임원안길분기)			주택
폐지	13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임원안4길 11-9		20210917	건축물대장말소	20090626	일련번호방식사용(임원안길분기)			주택
폐지	14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옥원길 68		20210917	건축물대장말소	20090626	행정구역명칭사용 (옥원이천로분기)			
폐지	15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비화진길 112-3		20210917	건축물대장말소	20090626	지역명(마을명)사용			주택

폐지	16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비화진길 112-2	20210917	건축물대장말소	20090626	지역명(마을명)사용	주책
폐지	17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노실길 81-7	20210917	건축물대장말소	20090626	지역명(마을명)사용	주책
폐지	18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노경산양길 58-25	20210917	건축물대장말소	20090626	행정구역명(노경, 산양)복합활용	주책
폐지	19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가곡천로 3037-1	20210917	건축물대장말소	20090626	지형지물(가곡천)명칭활용	버섯재배장
폐지	20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가곡천로 3037	20210917	건축물대장말소	20090626	지형지물(가곡천)명칭활용	주책
폐지	21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가곡천로 3035	20210917	건축물대장말소	20090626	지형지물(가곡천)명칭활용	주책
폐지	22	강원도 삼척시 신기면 서하길 40	20210917	건축물대장말소	20090626	행정구역명사용	공가
폐지	23	강원도 삼척시 신기면 강원남부로 2800	20210917	건축물대장말소	20090807	지역적 특성반영	공가
폐지	24	강원도 삼척시 노곡면 하반천길 68	20210917	건축물대장말소	20090626	행정구역명사용	
폐지	25	강원도 삼척시 노곡면 하마음길 59-14	20210917	건축물대장말소	20090626	행정구역명사용	
폐지	26	강원도 삼척시 노곡면 하마음길 59-4	20210917	건축물대장말소	20090626	행정구역명사용	공가
폐지	27	강원도 삼척시 노곡면 추지로 255-2	20210917	건축물대장말소	20090626	중점부행정구역명사용 (노곡면추지리)	
폐지	28	강원도 삼척시 노곡면 추지로 255-1	20210917	건축물대장말소	20090626	중점부행정구역명사용 (노곡면추지리)	
폐지	29	강원도 삼척시 노곡면 상천길 47	20210917	건축물대장말소	20090626	행정구역명사용	주책
폐지	30	강원도 삼척시 노곡면 상마음길 265	20210917	건축물대장말소	20090626	행정구역명사용	주책
폐지	31	강원도 삼척시 노곡면 박길남로 441-39	20210917	건축물대장말소	20090626	역사인물(박길남)이름활용 (문화재명칭)	공가
폐지	32	강원도 삼척시 노곡면 미근로 735-39	20210917	건축물대장말소	20090626	행정구역(미로, 노곡, 근덕)연결구간 시중점지역명칭활용(미로, 근덕)	주책
폐지	33	강원도 삼척시 노곡면 노곡로 196	20210917	건축물대장말소	20090626	행정구역명(노곡면)활용	주책

페이지	34	강원도 삼척시 노곡면 노곡로 165		20210917	건축물대장번호	20090626	행정구역명(노곡면) 활용	우사
페이지	35	강원도 삼척시 가곡면 가곡천로 1496-15		20210917	건축물대장번호	20090626	지형지물(가곡천)명칭활용	주택
페이지	36	강원도 삼척시 가곡면 가곡천로 915-6		20210917	건축물대장번호	20090626	지형지물(가곡천)명칭활용	주택

삼척시 공고 제2021-1052호

「삼척시 폐광지역 통합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와 「삼척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16일

삼척시장

삼척시 폐광지역 통합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폐광지역(강원남부)내 통합 영상미디어센터를 설립하여 폐광지역의 주민, 학생, 마을공동체 등이 미디어의 다양한 측면을 배우고 즐기고, 미디어 콘텐츠의 제작을 확산시킴으로써 미디어 산업을 육성하며, 도계 작은영화관과 연계한 예술영화 상영 등 문화레저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도록 통합 영상미디어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 및 관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적용대상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통합 영상미디어센터 명칭 및 위치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통합 영상미디어센터의 운영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통합 영상미디어센터의 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및 안 제7조)

- 시설·장비의 사용 및 교육 수강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 안 제10조)
- 통합 영상미디어센터의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 안 제16조)
-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7조 ~ 안 제21조)

3. 입법예고기간 : 2021. 9. 16. ~ 10. 6.(20일간)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0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삼척시장(참조 자원개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다. 의견 제출 및 문의처
 - 주소 : 삼척시 중앙로 296(교동) 삼척시청 자원개발과
 - 전화 : 033-570-4052
 - FAX : 033-570-3187
 - 전자우편 : by065@korea.kr

5. 참고사항

이 조례 제정안은 우리시 홈페이지(www.samcheok.go.kr) “시정소식-뉴스/미디어-입법/공고/고시” 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 붙임 1. 삼척시 폐광지역 통합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부.
 2. 입법예고안 검토의견서 서식 1부. 끝.

삼척시 조례 제 호

삼척시 폐광지역 통합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삼척시 및 폐광지역 주민들의 영상미디어매체 활용 능력을 높이고 영상문화와 영상산업의 기반을 확대하기 위하여 폐광지역 통합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상미디어센터”란 영상물의 창작 및 제작능력의 향상과 영상문화와 영상산업의 저변 확대를 위하여 제공되는 교육, 제작, 상영 등을 위한 설비와 장비를 갖춘 시설을 말한다.
2. “사용료”란 영상미디어센터의 시설을 사용하거나 장비를 사용 또는 대여할 때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3. “수강료”란 영상미디어센터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수강하는 자가 납부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삼척시 및 폐광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제4조(명칭 및 위치) ① 영상미디어센터의 명칭은 폐광지역 통합 영상미디어센터(이하 “미디어센터”라 한다)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도안과 약칭을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미디어센터는 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도계대한길 24에 둔다.

제5조(사업)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미디어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미디어센터 시설 및 장비의 유지, 관리, 보강 사업
2. 시민을 위한 영상미디어 활용능력 향상 교육
3. 영상미디어를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 제공
4. 미디어센터 장비 및 스튜디오 등의 제공
5. 영상물 상영, 영화·방송 제작 및 실습 프로그램 제공
6. 그 밖에 영상산업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시설) ① 시장은 제5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미디어센터에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사무공간: 사무실, 기자재 보관실
2. 교육공간: 강의실, 편집 교육실
3. 제작공간: 촬영 및 녹음스튜디오, 녹음조정실, 편집실
4. 상영공간: 전용상영관, 영상자료관

② 시장은 제1항의 시설 이외 필요한 시설을 추가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7조(운영시간 및 휴관) ① 미디어센터는 10시부터 18시까지 이용 할 수 있다. 다만, 교육 등 특별한 경우에는 조정하여 운영 할 수 있다.

② 미디어센터 휴관일은 매주 월요일, 신정, 설 연휴, 추석 연휴, 국경일 및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휴관 할 수 있다.

제8조(사용신청 등) ① 미디어센터의 시설 및 장비를 사용하거나 교육을 수강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온라인을 이용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9조(사용료 및 수강료) ① 사용자는 별표에 따른 사용료 또는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용료와 수강료는 미리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이미 납부된 사용료와 수강료는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전액 반환

- 가. 미디어센터의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되거나 재해, 천재지변, 그 밖의 사유로 사용 또는 교육이 불가능한 경우
- 나. 사용자가 사용허가를 받은 후 사용예정일 10일전까지 취소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 다. 교육을 수강 신청한 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게 되어 개강 전에 수수료의 반환을 요구한 경우

2. 일부 반환

- 가. 사용자가 사용허가를 받은 후 사용예정일 9일전부터 7일전까지 취소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 100분의 70
- 나. 사용자가 사용허가를 받은 후 사용예정일 전날까지 취소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 100분의 50
- 다. 수강 중 취업, 이사, 장기간 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 등으로 수강이 불가능 할 경우 : 그 달을 제외한 나머지 달의 수강료

④ 제3항에 따라 사용 및 수강을 취소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취소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사용료 및 수강료의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같은 법인 또는 단체의 사용료 면제는 월 1회에 한한다.

- 1. 영상문화와 영상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설립·조직된 비영리 법인·단체가 설립 목적에 맞게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 2.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사용료 또는 수강료를 면제할 수 있다.

-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경우에는 보호자 1명 포함)
-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7.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8.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9.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10.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1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 시설의 수용자
- 1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세대원 및 조손가정의 세대원
- 13.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 대상자
- 14. 세 자녀 이상을 둔 가정의 세대원
- 1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1조(미디어센터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미디어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폐광지역 통합 영상미디어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1. 미디어센터의 사업계획과 예산에 관한 사항
- 2. 미디어센터의 운영 및 발전·개선을 위한 사항
- 3. 지역영상사업 및 각종 미디어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
- 4. 다른 미디어센터 및 각종 문화시설과의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 5. 영상자료의 폐기 및 제적에 관한 사항
- 6. 그 밖에 미디어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2조(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의 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 1. 미디어센터 업무 담당국장
- 2. 교육, 문화, 영상 제작 및 기술 분야 전문가
- 3. 영상미디어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 4. 그 밖에 미디어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13조(위원장의 직무 등)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대행한다.

제14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간사) 위원회에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미디어센터 관련 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제16조(수당 등) 위촉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삼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위탁운영 등) ① 시장은 미디어센터의 전문적 관리, 운영 및 이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영상문화 및 영상산업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미디어센터의 운영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리 책임, 위탁기간, 위탁조건, 수탁기관의 권리와 의무, 위탁운영 수수료 등 위탁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하여 수탁기관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미디어센터를 위탁하는 경우 미디어센터장은 수탁기관의 추천에 따라 시장이 위촉한다.

④ 수탁기관은 시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 미디어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자체 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8조(경비의 지원) 제17조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미디어센터의 운영비는 미디어센터 사용료 및 수수료, 수탁기관 부담금,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수탁기관의 의무) ①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모든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모든 재산 및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수탁기관은 시장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수탁재산을 제5조에 따른 사업용도 외에 사용하는 행위
2. 수탁관리 권한의 양도나 대여
3. 수탁재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
4. 수탁재산의 원형을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행위

제20조(지도·감독) ① 수탁기관은 미디어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시장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시설운영 전반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점검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기관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의 점검 또는 감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으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1조(위탁의 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제19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수탁기관이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수탁기관이 위탁계약을 위반한 경우
4. 수탁기관이 미디어센터 사업목적에 위배되게 운영한 경우
5. 수탁기관이 미디어센터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시설을 임의로 변경한 경우
6. 그 밖에 공익상 위탁운영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위탁계약이 취소된 때에는 지체 없이 수탁재산을 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22조(손해배상 책임) 사용자는 사용 기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 또는 장비를 훼손한 경우에는 피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질 수 있다.

제23조(자원봉사자) ① 미디어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각종 시민 대상 프로그램의 운영·지도 및 보조업무 자원봉사자를 배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4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삼척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삼척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및 「삼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시설 및 장비 사용료 등 기준표 (제9조 관련)

시설 사용료

시 설	기준	금액(원)	비고
일반강의실	실별 1일 4시간	10,000	각 시설에 있는 장비의 사용료를 포함한 금액임.
영상스튜디오			
소형라디오 스튜디오			
1인방송실			
동아리방			
DVD감상실			

◇ 이용시간 4시간 미만은 4시간으로 계산하며, 1회 신청시 4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장비 사용료

구 분		기 준	사용료 (원)	비 고
촬영장비	디지털 필름 카메라	1일	5,000	
	4k 캠코더			
	6미리 카메라			
	디지털 캠코더			
	DSLR 카메라			
	뮤직캠			
	디지털 카메라			
	카메라 캠코더			
촬영보조장비	모니터	1일	3,000	
	거치대			
	삼각대			
조명장비	반사판	1일	5,000	
	반사판 거치대			
	무대조명용 조명			
	사진 및 방송 조명			
녹음장비	현장 녹음장비	1일	5,000	
	마이크			
	무선 편마이크			
	무선 마이크			
	휴대용 레코더			
기타장비	이동스크린	1일	5,000	
	무전기			
	노트북			

◇ 상기장비의 추가로 장비 사용할 경우 상호 협의하여 사용한다.

수강료

구 분	단 위	금 액	비 고
교육수강료	1명 1강좌	5,000원	교재비와 재료비는 본인이 추가 부담한다.

[별지 제2호서식]

수강신청서

사용자	성명			
	주소		연락처	
수강강좌				
수강료		금	원	
수강료 면제여부 및 면제사유				
<p>「삼척시 폐광지역 통합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따라 교육 수강을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사용자와의 관계 :)</p> <p>삼척시장 귀하</p>				
비고		※ 수강료 면제자의 경우에는 면제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3호서식]

시설(장비) 사용 취소 신청서

사 용 자	주 소 (소재지)			전화번호	
	성 명 (단체명)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사 용 시 설					
사 용 장 비					
사 용 일 시					
사 용 목 적					
사 용 료	원	반환계좌	은 행 명		
			계좌번호		
			예 금 주		
취소신청사유					

「삼척시 폐광지역 통합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라 시설(장비) 사용을 취소 및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사용자와의 관계 :)

삼척시장 귀하

[별지 제4호서식]

수강 취소 신청서

사 용 자	주 소 (소재지)			전화번호	
	성 명 (단체명)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수 강 강 좌					
수 강 료	원	반환계좌	은 행 명		
			계좌번호		
			예 금 주		
취소신청사유					

「삼척시 폐광지역 통합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라 교육 수강 취소 및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사용자와의 관계 :)

삼척시장 귀하

입법예고안 검토의견서

▣ 조례명 : 삼척시 폐광지역 통합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의견제출자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개정안	검 토 의 견	
	수정안	검토사유